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71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이종배 · 송석준 · 김태규
서명옥 · 김기웅 · 배준영
최은석 · 안철수 · 안상훈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2조의2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교부금의 성과 평가 및 공개) ① 시·도의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교부금의 성과 평가 및 공개) ① 시·도의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